## 김포시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3412호 제출년월일 2024. 2. . 제 출 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○ 김포시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기준, 사후관리,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, 책무(안 제1조 ~ 4조)
- 나. 친선결연 등의 대상 및 기준, 체결(안 제5조 ~ 7조)
- 다.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(안 제8조)
- 라. 친선결연 등의 취소, 의회의 동의(안 제9조 ~ 10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나. 관계 법령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2024. 1. 31. ~ 2. 13. (10일)

2) 부서협의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

나) 경 기 도 : 국제경제협력과

# 김포시 국내 · 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가 국내·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교류협력"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, 협력,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·물적자원은 물론 문화·제도·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 한다.
  - 2. "친선결연"이란 국내·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, 경제, 문화,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.
  - 3. "우호교류" 란 친선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단계를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국내·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김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국내·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·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서 관련기관, 단체 또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친선결연 등) 시장은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·외 도시 와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(이하 "친선결연 등"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.
- 제6조(친선결연 등의 대상 및 기준) ①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김포시(이하

- "시"라 한다)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면서 지역여 건 등이 대등한 국내·외 도시 등으로 한다.
- ② 시장은 국내·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1. 면적, 인구,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
- 2. 산업,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
- 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
- 4.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
- 5. 역사・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
- 6.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
- 제7조(친선결연 등의 체결)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·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,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.
  -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시장과 국내・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  - ③ 친선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조(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) ① 시장은 국내·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문화・예술・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
  - 2.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
  - 3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간 교류협력
  - 4.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
  - 5. 시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
  - 6.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
  - 8. 재난·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·구호물푺의 지원
  - 9.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,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

- 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9에 따른다.
- 제9조(친선결연 등의 취소)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.
- 제10조(의회 의결) 시장은 국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, 변경, 취소하고자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친선결연 등의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내·외 도시 등과 체결한 친선결연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·소		자치행정과
입 안	실·과·소장 성 명	자치행정과장 송 천 영
	담 당 성 명	대외협력팀장 윤 선 영
자 	담 당 자 전 화	지방행정서기 박 지 희(☎2071)

## 관계 법령 (발췌)

### 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- 2. 예산의 심의 · 확정
- 3. 결산의 승인
-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·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- 5. 기금의 설치 · 운용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· 처분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
-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-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
####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-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93조(지방자치단체의 역할)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·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·협력, 통상·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, 민간기관, 국제기구(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·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,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,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